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5

인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16가단2070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
원 고	A
피 고	1. [redacted] (소관 : [redacted]세무서, [redacted]세무서)
	2. [redacted]군
	3. [redacted]군
변 론 종 결	2016. 8. 24.
판 결 선 고	2016. 10. 19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[redacted]은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14. 5. 27.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. 5. 27.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, 피고 [redacted]군은 같은 등기소 2014. 5. 27.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, 피고 [redacted]군은 같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5

은 등기소 2014. 5. 27.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(이 사건 소 중 피고 B, C, [redacted]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취하로 확정되었다)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4. 5. 26.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, 2014. 5. 27.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, 피고 B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, 피고 [redacted]은 피고 B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등기(처분청 [redacted]세무서) 및 피고 C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(처분청 [redacted]세무서)를 각 마쳤고, 피고 가평군은 피고 B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, 피고 [redacted]군은 피고 C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.

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고,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로서 모두 말소의 대상이므로, 위 각 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위 각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

2. 판 단

살피건대,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,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(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5

2012다84479 판결).

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나, 갑 제2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인 '매매'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성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5

[별 지]

부동산 목록

1. [redacted]군 [redacted] 임야 861㎡

2. 임야 833㎡

3. 임야 851㎡

4. 임야 94㎡

5. 임야 1979㎡

6. 임야 331㎡

-이 상-